

1.약관명: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_채권유동

화목적_포함)

2.시행일: 2024.12.02

3.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 1 조 거래조건</p> <p>이자율</p> <p>(기본약관 제 3 조제 2 항 선택)</p> <p>*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p>	<p>제 1 조 거래조건</p> <p>이자율</p> <p>(기본약관 제 3 조제 2 항 선택)</p> <p>*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p> <p>** 소득구간별 하한금리</p> <table border="1"><thead><tr><th>연 소득</th><th>하한금리</th></tr></thead><tbody><tr><td>1.3억원 이하</td><td>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td></tr><tr><td>1.3억원 초과</td><td>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td></tr></tbody></table>	연 소득	하한금리	1.3억원 이하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p>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p>
연 소득	하한금리							
1.3억원 이하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p> <p>④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p> <p>⑤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p> <p>⑥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 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p>	<p>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p> <p>④ 본인은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p> <p>⑤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단,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p> <p>⑥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p> <p>⑦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본인이 만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로서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양가족 또한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고 부양가족의 전입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p>	<p>신생아 특례대출 추가주택 취득 검증 대상자 확대</p> <p>신생아 특례대출 기금중복대출 검증 대상자 확대</p> <p>부양조건 세대원 전입의무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p> <p>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2. 제6조제5항, 제6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p> <p>제 11 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p> <p>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p>	<p>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p> <p>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2. 제6조제6항, 제7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p> <p>제 11 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p> <p>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p>	<p>추가주택 취득 및 기금중복대출 검증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p>